

#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2. . .   |
| 발 의 자 | 김근한 의원 외 6명 |

#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2. . .

발 의 자 :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영태 · 김원섭  
김재우 · 소진혁 · 정지원 의원(7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 
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
- 나. 신설 민간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재위탁 및 재계약까지 범위를  
확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도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나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3)
- 다.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규정 개정(안 제5~6조)
- 라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적용례(안 부칙 제2조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
2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
3.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
4.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4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·소장

2.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  3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 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  5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④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관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-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의회 동의 및 보고)”를 “(의회 동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하며,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

단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받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”를 “받으려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,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위원회의 설치”를 “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선정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선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(관리위원회·선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위촉을 해제”를 “해당 위원을 해촉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선정위원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조례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

시행 이후 신설, 재위탁,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4조의2(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</u></li> <li><u>2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</u></li> <li><u>3.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u></li> </ol>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4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·소장

2.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
3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
5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관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의회 동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 의회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동의를 받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,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4장 위원회의 설치

제10조(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 한다. <후단 삭제>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--  
-----  
----- 받으려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

제10조(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

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·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, 민간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(생략)

⑦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또는 부서장이 된다.

회) ① -----  
-----  
----- “선정위원회”-----  
----- 선정  
위원회-----  
-----.

② 선정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선정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선정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선정위원회 -----  
----- 1명-----  
-----  
-----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<u>위원</u>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<u>위원을 해제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15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<u>위원회</u>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 <u>위원</u> (<u>관리위원회·선정위원회</u> <u>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</u>) ----- <u>해당 위원을 해촉</u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재계약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 <u>선정위원회</u> 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#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④ (생략)

#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(안 제4조의3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지급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  - 산출내역 : 100천원 × 9명 × 8회 = 7,200천원
  - 산출근거 : 70,000원(기본)+30,000원(초과), 위촉위원 최대 9명으로 산정  
연 8회 정도 개최 예정

## 4. 작성자 : 총무과 인사계 양상병(054-480-6773)